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

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,

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
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입니다.

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「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생각합니다.

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,

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노동자와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시민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가 출자출연기관 소속이 아니 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있어, 이러한 경우에 도 서울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항 을 정하는 것입니다.

서울시장은 출자출연기관과 계약하는 기업에 소속된 노동자에 대해서도 생활임금 적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,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하고, 계약시 이를 대금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아무쪼록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생활임금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「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·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!